

식품안전정책 조사 보고서 2018-03

주요국 수입식품 유통관리 제도

2018. 9.

본 「식품안전정책 조사 보고서」는 2018년 해외 주요국가의 식품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본부 글로벌정보부 (☎ 02-744-8147)

【참여진】 김정민·이희정(총괄)·성경숙(독일)·양지영(일본)·권나경(중국)

목 차

제1장 개요	1
1. 배경	3
2. 조사 내용과 방법	4
3. 제외국 현황	5
<주요국 수입식품 유통관리 현황 요약>	6
제2장 국가별 현황	7
I. 독일	9
1. 개요	9
2. 근거 법령	10
3. 수입식품 유통관리 기관	11
4. 주요 내용	12
II. 일본	23
1. 개요	23
2. 근거 법령	23
3. 수입식품 유통관리 기관	24
4. 주요 내용	25
III. 중국	35
1. 개요	35
2. 근거 법령	36
3. 수입식품 유통관리 기관	37
4. 주요 내용	38
제3장 맺음말	48

제1장 개 요

1. 배경

-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됨에 따라 식품의 교역량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국내 수입식품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2016년도 기준 수입 건수는 2012년도 대비 31.7%, 중량은 8.9%, 금액은 9.8% 증가하였음¹⁾
- 한편, 교역국의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수준은 아니어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국내의 경우 수입식품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2015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의 '수입식품등'²⁾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 등의 관리 정책을 마련·운영하고 영업자를 지도·감독해야 함. 특히 동 법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수입식품 유통관리 정책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외국의 수입식품 유통관리 관련 법령, 관리 기관, 주요 제도 등을 조사함

1)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수입식품등 검사 연보, 2017, 19면 참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함

2. 조사 내용과 방법

조사 대상 국가

- 독일(유럽연합 포함)
- 일본
- 중국

조사 범위

- 조사 대상 국가별 수입식품, 유통관리에 관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사

조사 항목

- 수입식품 유통관리 기관 및 관련 법령
- 수입식품의 유통관리 제도

* 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유통식품 관리 및 유통식품에 관한 검사명령 제도 포함

조사 방법 및 기간

- (방법) 해외 각 국가의 식품 관련 법령, 정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자료,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 (기간) 2018년 7월 ~ 9월

3. 제외국 현황

- 유럽연합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EU와 동일하거나 동등한 위생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원국인 독일은 유통되는 수입식품 및 수입업자에 대해 정기적인 샘플 검사 및 영업장 점검을 통해 EU 및 독일의 식품 법규가 준수되는지 감시함
- 또한 유럽연합은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식품안전 정보 등을 토대로 한 임시 조치가 가능하고, 독일의 경우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통을 임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통해 수입식품 등의 중점 감시지도 항목, 수입업자의 자주적 위생관리 지도 사항 등을 정하고, 도도부현 등이 지역 실정에 맞게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 후생노동성은 해외 식품안전정보에 근거하여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검사 강화, 유통 상황 조사, 회수 및 수입신고 보류 등의 긴급 대응을 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유통단계 식품샘플검사, 식품판매에 대한 감독조사에서 수입식품의 유통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정보 수집, 수입식품 리스크조기경보 및 통제조치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표> 주요국의 수입식품의 유통관리 현황 요약 (상세 사항 각 국가별 자료 참조)

구분	근거 법령	유통관리 기관		주요 제도	
				일반	세부사항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규정* (EC) No 178/2002 ○ 유럽규정* (EC) No 852/2004 ○ 유럽규정* (EU) No 2017/625 * 유럽규정(Regulation)은 회원국의 국내법 제·개정이 필요 없이 직접 효력 발생 ○ 식품사료법(LFGB) ○ 식품감사에 관한 일반 행정규칙(AW Rüb) ○ 모니터링 실행을 위한 일반 행정규칙 (AWV Monitoring 2016-2020) 	중 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식품농업부(BMEL) - 유통관리 관련 법령 제·개정 ○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 각 주의 감시 계획 조정, 결과 취합 ○ 연방위해평가원(BfR) - 감시 결과에 따른 건강 리스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유통관리계획상 수입식품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 ○ 전국감시계획 (영업장 점검 및 샘플검사) ○ 모니터링 ○ 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임시 조치 ○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지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의 식품 및 소비자보호 관련 부처 - 식품감시관청의 통제 업무 조정 및 감독 ○ 지자체자치단체의 식품수의감시관청 - 식품영업장 점검, 식품 샘플 수거, 결과 보고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 식품 위생에 관한 감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지침(후생노동성 고시) 	중 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생노동성 -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수립,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검역소에 관련 정보 제공 및 조치 강구 등 ○ 소비자청 - 식품표시 소관 입장에서 도도부현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 수출국에 대한 대책, 일본 내 통관 유통의 전반적인 감시지도계획 수립(후생노동성) ○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 - 수입식품을 포함한 식품 전반 및 식품 관련 업자(수입업자 포함)에 대한 감시지도 실시(도도부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검사 및 식품 등의 검사 ○ 해외로부터의 문제 발생 정보 등에 근거한 긴급 대응
		지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도부현 - 수입식품 유통 관련 감시지도계획 수립 및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감시지도 등을 실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법 ○ 식품생산경영 일상감독조사 관리 방법 ○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 ○ 식품안전 샘플검사 관리 방법 ○ 수출입식품 안전정보 및 리스크 조기경보 관리 실시세칙 	중 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유통단계 식품안전 관리 총괄 ○ 해관총서 - 수출입식품안전정보, 리스크조기경보 관리업무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유통관리계획상 수입식품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단계 식품샘플검사 ○ 식품판매 일상감독조사 ○ 수입식품안전정보 수집 ○ 수입식품 리스크조기경보 및 통제조치
		지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 해당 행정구역에 대한 유통단계 식품안전관리 ○ 각 지역 출입국검사검역기구 - 수출입식품안전정보 수집정리, 리스크조기경보 실시 		

제2장 국가별 현황

1. 개요

- 유럽연합(EU)은 동물유래 식품 등 일부 식품의 수입 및 통관 단계의 검사에 대하여는 특정 EU법*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통일된 수입식품의 검사를 수행하나, 회원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EU 내에서 제조된 식품과 함께 회원국의 공식 통제(official control) 계획에 따라 관리함
 - * 특정 사료 및 비동물성 식품 수입검사 강화에 관한 유럽규정 (EC) No 669/2009¹⁾, 제3국산 식품에 대한 수의학적 검사에 관한 유럽이사회 지침 97/78/EC²⁾ 등³⁾
- EU 회원국인 독일의 경우 '수입식품' 및 '식품감시' 와 관련된 법령상에서 수입식품의 유통관리를 위한 별도의 감시계획 수립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특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수입식품 또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독일 각 주의 식품감시당국은 수입식품을 포함한 독일 내 유통식품과 수입사를 포함한 식품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인 샘플채취와 영업장 점검을 통해 EU 및 독일의 식품관련 법규가 준수되는지 여부를 감시함
 - 연방 정부는 5년 단위의 '다년도 국가 통제 계획'을 통해 공식 통제의 목표 및 전략을 수립
 - 각 주는 매년 '전국감시계획', '모니터링', '동물유래 식품의 전국잔류검사계획' 등에 따라 수입식품을 포함한 유통식품을 관리
 -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각 주의 감시 결과를 취합하여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EU에 보고하고 BVL-홈페이지⁴⁾에 발표

1)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69/2009 of 24 July 2009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increased level of official controls on imports of certain feed and food of non-animal origin and amending Decision 2006/504/EC

2) COUNCIL DIRECTIVE 97/78/EC of 18 December 1997 laying down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organisation of veterinary checks on products entering the Community from third countries

3) 유럽연합의 EU법 안내에 따르면 유럽규정(regulation)은 EU 전역에 구속력을 갖으며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입법 형태로 EU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공통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마련되며, 지침(Directives)은 모든 EU 회원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며, 개별 회원국은 자국 법에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르게 고안할 수 있음 (https://europa.eu/european-union/eu-law/legal-acts_en(2018.9.11. 방문))

4)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BVL 보고서, (https://www.bvl.bund.de/DE/08_PresseInfothek/04_Publikationen/03_Berichte/infothek_berichte_node.html#doc1401838bodyText3) (2018.8.16. 방문)

2. 근거 법령

□ EU 법령

○ 유럽규정(EC) No 178/2002⁵⁾

- EU의 식품안전 기본법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건을 비롯해 수입식품에 대한 일반적 요건과 EU의 긴급 대응 등에 대해 정함

○ 유럽규정(EC) No 852/2004⁶⁾

- 식품위생에 관한 유럽규정으로 식품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식품위생 관련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음.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에서 수출까지의 모든 단계에 적용됨

○ 유럽규정(EU) No 2017/625⁷⁾

- 공식 통제에 관한 유럽규정으로 회원국의 공식 통제 기관의 의무, 공식 통제의 원칙, 절차, 방법, 공식 통제 활동, 샘플링, 공식 통제의 자원 확보 등의 사항을 규정함

* 동 유럽규정은 2017년 3월에 채택되었으며, 유럽 회원국과 산업계가 신규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효되고 있으며, 현재 공식 통제에 관한 (구)유럽규정(EC) No 882/2004⁹⁾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음

5)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2R0178&from=EN>)

6)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4R0852&from=EN>)

7)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rch 2017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7R0625&from=EN>)

8) 유럽규정(EU) No 2017/625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 식품 안전 포커스 (1분기), 2017. 9면 이하 참조

9)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4R0882>)

□ 독일 법령

- 「식품사료법(LFGB)」¹⁰⁾
 - 식품, 사료, 화장품, 생활용품의 유통, 감시,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식품감시에 관한 일반 행정규칙(AVV RÜb)(이하 '식품감시 행정규칙')¹¹⁾
 - 각 주의 식품감시 기관의 통일된 식품감시 집행을 위한 일반 행정규칙으로, 당국의 감시에 대한 요건, 감시 프로그램, 샘플 채취·검사, 수입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모니터링 실행을 위한 일반 행정규칙(AVV Monitoring 2016-2020)(이하 '모니터링 행정규칙')¹²⁾
 - 전국 차원의 모니터링 실행을 위한 일반 행정규칙으로,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 전문가 그룹, 모니터링 계획, 샘플 채취·처리·분석,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수입식품 유통관리 기관

(1) 중앙 행정기관

- 연방식품농업부(BMEL)
 - 식품안전 감시에 관한 최고 연방행정기관으로 수입식품을 포함한 식품의 유통관리에 관한 연방차원의 법규 제·개정
-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 전국에서 통일된 감시가 가능하도록 각 주에서 실시할 감시 프로그램을 조정
 - 각 주의 감시 결과를 취합·평가하여 유럽집행위원회와 연방식품농업부(BMEL)에 보고
- 연방위해평가원(BfR)
 - 각 주 감시 결과를 토대로 건강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담당

(2) 지방 행정기관

- 각 주의 식품 및 소비자보호 관련 부처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감시관청의 통제 업무 조정 및 감독

10) 「식품, 생활용품, 사료 법전(식품사료법-LFGB)」 (<http://www.gesetze-im-internet.de/lfgb/LFGB.pdf>)

11) 「식품법, 동물유래 부산물, 와인법, 사료법, 담배법의 규정 준수에 대한 당국의 감시 실행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일반 행정규칙(AVV Rahmen-Überwachung - AVV RÜb)」 (http://www.verwaltungsvorschriften-im-internet.de/bsvwvbund_03062008_3158100140002.htm)

12) 「2016~2020년도 식품 등 모니터링 실행을 위한 일반 행정규칙(AVV Monitoring 2016-2020)」 (http://www.verwaltungsvorschriften-im-internet.de/bsvwvbund_14122015_313221070002.htm)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수의감시관청

- 식품영업장을 점검하고 실험실에서 검사될 식품 샘플 수거
- 영업장점검 및 샘플검사 결과를 상위 관청에 보고

4. 주요 내용

(1) EU의 수입식품 관리

□ 수입식품 관리 원칙

- (수입식품의 기본 요건) EU의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유럽규정(EC) No 178/2002 제11조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EU법상 관련 요건 또는 EU가 최소 동일하다고 인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
 - * 다만, EU와 수출국 사이에 특별한 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협약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수입업자의 의무) 동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를 포함한 식품사업자는 생산, 가공 및 판매의 모든 단계에서 식품 등이 식품법상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당 요건들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함
- (회원국의 감시) 동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들은 수입업자를 포함하여 생산, 가공, 판매의 모든 단계의 식품사업자가 식품법상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는지 감시해야 함
 - 회원국은 감시를 위한 공식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식품 및 사료의 안전 감시(surveillance)와 기타 모니터링(monitring) 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수입식품에 관한 임시 조치) 동 법 제53조에 따라 수입식품 등이 인체, 동물, 환경에 대해 심각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해당 회원국의 조치에 따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당 리스크를 제어하기 어려운 경우 유럽집행위원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스스로 또는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즉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단일 또는 다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특히,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식품에 대한 긴급대응으로 우려가 되는 제3국의 전 지역 또는 일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외 적합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입식품의 위생에 관한 기본 원칙

- 식품위생에 관한 유럽규정(EC) No 852/2004 제1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의 위생 수준은 최소한 EU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위생 수준과 동일하거나 동등해야 함
 - 수입식품의 위생과 관련해서 동 법의 '식품사업자에 대한 일반적 의무', '일반 및 특별 위생요건', 'HACCP', '공식 통제', '등록 및 승인'의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됨

□ 수입식품에 대한 공식 통제 원칙¹³⁾

- (의무적 수입검사) 살아있는 동물, 동물 유래 식품 등은 의무적으로 국경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럽규정을 통해 회원국에서 통일된 검사가 적용됨
- (기타 수입검사) 의무적 국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들을 제외한 기타 제품은 특정 국경 기관(specific border entities)을 거치지 않으며, EU로 반입되기 위해 의무적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의무적 수입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사료, 비동물성 식품(특정 조합 제품¹⁴⁾, 첨가물, 식품접촉물질 포함) 등임
 - *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라도 리스크가 확인된 경우 임시적으로 의무적 국경검사를 받게 되며, 해당 식품 리스트는 유럽규정(EC) No 669/2009를 참고할 수 있음
- (유통관리) 유럽규정(EU) No 2017/625 제109조에 따라 회원국은 식품사업자가 식품법규를 준수하는지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Multi-annual national control plans, MANCP)'을 수립하여야 함. 회원국은 매년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과 그에 따라 실행된 감시 결과를 EU 집행위에 보고해야 함

(2) 독일의 수입식품 유통관리

□ 수입식품 유통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

- (유통관리) 독일 식품법상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별도의 유통관리는 확인되지 않으며, 각 주의 식품감시당국은 매년 수립한 감시 계획에 따라 수입식품과 수입업체를 포함한 식품의 샘플 수거 검사와 영업장 점검을 실시함
- (감시 프로그램) '식품감시 행정규칙'에서는 전국에서 통일된 유통관리가 가능하도록

13) EU집행위원회, 수입식품에 대한 공식 통제 안내
(https://ec.europa.eu/food/safety/official_controls/legislation/imports_en)

14) 조합 제품(composite products)은 식물유래 제품과 동물유래 가공 제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세 내용은 GUIDANCE DOCUMENT Key questions related to import requirements and the new rules on food hygiene and official food controls, 8면 이하 참고

영업장 점검에 관한 기본 원칙을 비롯해 아래의 감시 프로그램과 샘플 채취 및 샘플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
- 전국 감시계획
- 동물 부산물 및 그 후속 제품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 식품 중 식물보호제 잔류 감시를 위한 전국 프로그램 등

<그림 I-1> 독일, 유통식품 감시 보고서 예시



□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Multi-annual national control plans(MANCP))¹⁵⁾**

- (근거 법령) 유럽규정(EU) No 2017/625 제109조, 독일 '식품감시 행정규칙' 제10조에 따라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을 수립함

유럽규정(EU) No 2017/625

제109조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 및 중앙 기관

- (1) 회원국은 동 규정에 따라 소관 당국이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을 토대로 공식 통제가 실시되고,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이 전체 영토에 대해 조정되도록 해야 함
- (2) 회원국은 아래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 기관을 지명해야 함
 - a) 공식 통제를 담당하는 모든 관청들과 함께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 수립 조정
 - b)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의 일관성 확보
 - c) 제113조의 연례보고서 제출과 제111조에 따른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의 검토 및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 운영에 대한 정보 수집

- (목적) 독일 등 EU 회원국은 수입식품을 포함하여 식품 등의 안전 및 위생 관련 법규가 준수되는지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을 수립함
 - 독일은 5년을 주기로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¹⁶⁾을 수립하여 공식 통제를 실시
- (구성) 다년도 국가 통제 계획은 기본 계획(Part 1)과 16개 주의 계획(Part 2)으로 구성됨
 - (Part 1) 식품안전, 사료안전, 동물보호 및 동물건강, 식물건강 분야의 대한 일반적 전략, 실행 목표, 소관 연방 관청 및 연구소, 연방/주 위원회, 작업단의 조직· 과제· 구조와 이들 기관의 협력 및 상호작용
 - (Part 2) 주 정부의 개별 관리계획
- (주요 내용)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에는 식품 및 사료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통제, 동물건강 및 동물보호, 식물건강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인력 및 재원을 포함한 통제 구조, 세부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독일이 운영 중인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2017-2021)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음

15)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에 대한 안내
(https://www.bvl.bund.de/DE/01_Lebensmittel/01_Aufgaben/02_AmtlicheLebensmittelueberwachung/02_MNKP/1_m_mnkp_node.html)

16) 현재 운영 중인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2017-2021): Integrierter mehrjähriger Kontrollpla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2017.1~2021.12)

독일의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2017-2021) 목차

Part1 기본 계획

A. 식품안전, 사료안전, 동물건강, 동물보호, 유기 농업, 농산물 및 식품의 품질규제

A-1: 식품안전, 사료안전, 동물건강, 동물보호

- 공식 통제에 대한 주정부의 일반적인 전략 및 운영 목표
- 소관 당국, 국가참조실험실, 위탁검사소 지정
- 소관 당국에 의한 공식통제의 조직 및 관리
- 위기대응계획 및 상호 지원
- 품질관리 및 QM, 감사 시스템의 평가
- 유럽규정 882/2004에 따른 업무기술 기준 충족을 위한 조치
- 계획의 검토 및 조정

A-2: 유기 농업 및 농산물 및 식품의 품질 규제

- 유기 농업
- 농산물 및 식품의 품질 규제

B. 식물 건강 분야

- 식물건강 분야의 전략적 목표 설정
- 소관 당국, 국가참조실험실, 위탁검사소 지정
- 소관 당국에 의한 공식통제의 조직 및 관리
- 위기대응계획 및 상호지원
- 소관당국의 감시 규정
- 유럽규정 882/2004에 따른 업무기술 기준 충족을 위한 조치
- 계획의 검토 및 조정

Part 2: 주정부의 통제 계획

- (결과 보고) 독일 정부는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전략적 목표가 해당 연도에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운영 보고서*를 매년 유럽집행위에 보고하며, 운영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2016년도 다년도 국가 통제계획에 대한 독일 보고서: Jahresbericht 2016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m mehrjährigen nationalen Kontrollplan nach VO (EG) Nr. 882/2004

- 통제 분야*에서 계획되고 실시된 통제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과 중점 사항

* 식품안전, 사료안전, 동식물 건강, 동물보호 등

- 통제활동에서 획득한 중요한 사실들의 요약과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및 조치

□ 전국감시계획(BÜp)¹⁷⁾

- (근거 법령) 독일 「식품사료법(LFGB)」 제39조에 근거하여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각 주와 협의하여 전국감시계획(BÜp)을 수립하며, '식품감시 행정규칙' 제11조에는 전국감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세 사항이 정해져 있음

「식품사료법(LFGB)」

제39조 소관당국의 책무와 조치

- (1) 동 법과 동법에서 위임한 법규명령 또는 동 법의 적용분야의 제품 및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의 직접 유효한 법규명령의 준수를 감시하는 것은 소관당국의 책무임. 정기적인 점검과 샘플채취로 이들 규정이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함

- (목적) 전국감시계획(BÜp)은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래의 목적을 위해 각 주들이 협의하여 수립하는 1년 단위의 통제 계획임
 - 샘플 검사 및 영업장 점검을 통해 식품법, 와인법, 담배법 등의 규정 준수 여부 감시
 - 최대합량 또는 표시규정 등이 개정된 경우, 새로운 법 규정의 준수 및 위반 정도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 파악
 - 최근 이슈 상황을 규명하고 최대합량의 임시 설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
- (주요 내용) 전국감시계획(BÜp)은 크게 영업장 점검 계획과 샘플 검사 계획으로 구성됨
 - 영업장 점검 계획에는 점검 대상 영업의 종류, 점검 내용, 실시 기간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됨
 - 식품 등의 생산품에 대한 검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샘플의 총수, 채취되는 샘플의 종류, 각 주에서 검사될 샘플수의 배분, 생산품 중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확인될 성분 또는 미생물, 사용되는 검사법의 검출 한계, 검사법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감시 프로그램 선정) 전국감시계획에 따른 감시에서는 리스크 분석을 토대로 검사될 대상 샘플과 영업장, 감시 프로그램이 선정됨
 - 각 주정부, 연방식품농업부(BMEL),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연방위해평가원(BfR)이 감시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감시 프로그램을 선정함
 - 각 주는 어떤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검사될 샘플 개수를 정함

17)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전국감시계획에 대한 안내
(https://www.bvl.bund.de/DE/01_Lebensmittel/01_Aufgaben/02_AmtlicheLebensmittelueberwachung/03_BUEP/1_m_buep_node.html)

- (샘플 검사) '식품감시 행정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감시당국과 검사실험실의 협의 하에 리스크 중심의 샘플 검사가 실시됨
 - 샘플 검사는 식품의 경우 매년 인구 1000명당 5개, 담배, 화장품, 생활용품의 경우 0.5개의 샘플이 검사되어야 하며, 전체 샘플 건수 중 일부가 전국감시계획(BÜp)에 따라 채취됨
 - '식품감시 행정규칙' 제11조에 따라 각 주는 전국감시계획(BÜp)으로 매년 인구 1000명당 최소 0.15개 최대 0.45개의 샘플을 채취하게 됨
- (영업장 점검) 영업장 점검은 '식품감시 행정규칙'에 정해진 영업장 점검에 관한 기본 원칙과 실행 방법에 따라 실시됨
 - 우선 식품영업장은 '식품감시 행정규칙'의 리스크 평가 시스템에 따라 리스크 등급이 부여됨
 - 리스크 등급에 따라 영업장 점검 주기가 '1일', '1주일', '1달', '분기', '반년', '1년', '1.5년', '2년', '3년'으로 정해짐
- (평가 및 보고서) 각 주의 감시 결과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에 취합되고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각 주와 합의하에 감시 결과에 대해 평가함
 - 감시 결과는 매년 '식품안전 보고서(Bericht zur Lebensmittelsicherheit)'로 발표되고, 식품안전 분야의 리스크 저감화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됨
- (운영 사례) 2016년도의 경우 아래의 13개 감시 프로그램이 채택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약 4,800개 샘플 검사 및 4,500회의 영업장 점검이 실시되었음

<표 I -1> 독일, 2016년도 전국감시계획(BÜp)의 세부 감시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식품의 성분 및 제조공정 사용에 대한 감시	① 라이스 베이스 제품 중 무기비소 ② 영아 및 소아용 당근주스와 체리주스의 벤졸 ③ 베이커리 제품의 글루텐 프리 표시 ④ 가금육 원료의 비가열 소시지의 성분관련 유통명칭
식품 중 미생물 감시	⑤ 즉석섭취용 습식 면류의 미생물 상태 ⑥ 농장 우유 자판기 생유의 미생물 상태 ⑦ 절단 과일의 미생물 상태
생활용품 및 화장품 감시	⑧ 선크림의 파라벤 ⑨ 핸드폰 케이스의 프탈레이트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⑩ 바디로션, 샤워젤, 헤어케어 제품의 파라벤 ⑪ 금속 소재 장난감의 니켈 방출
영업장 감시	⑫ 비포장, 쉽게 상하기 쉬운 식품 취급 이동식 업장의 위생 점검 ⑬ 감염법에 따른 최초 및 후속 교육 점검

□ 모니터링(Monitoring)¹⁸⁾

- (근거 법령)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과 각 주는 「식품사료법(LFGB)」 제51조에 근거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행정규칙'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식품사료법(LFGB)」

제51조 모니터링의 실시

- (1) 각 주의 소관당국은 제품에 존재하는 동 법 제50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분 (식물보호제, 약리작용물질, 중금속, 미생물 등)의 함량을 조사하며, 모니터링 실시에 대해 일반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를 토대로 함

- (목적) 연방 및 주정부는 생산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대표적인 데이터를 획득하여 발생 가능한 건강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여 리스크 저감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함
 - * 식품의 경우 1995년부터, 화장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실시
- (대상 선정) 모니터링 대상 식품과 물질은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이 제안하고 연방위해평가원(BfR) 및 소관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받아 정해짐
 - 모니터링 대상 식품은 전국식이조사에 근거하여 선택된 대표적인 다소비 식품들임
 - 모니터링 대상 물질은 연방과 주가 수립한 유해물질 및 미생물의 리스크 평가를 위한 기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수립한 장기 계획에 따라 선정됨
 - 2003년부터는 특정 식품의 특정 성분에 대해 검사하는 '프로젝트 모니터링'도 같이 실시되고 있으며, 동 모니터링은 특정 물질과 관련되어 실시되며, 리스크 평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최근 제기된 문제의 규명을 위함임
- (샘플수 선정) '모니터링 행정규칙' 제3조에 모니터링 실시 기간 중 매년 각 주에서 실시해야 하는 샘플 검사 횟수가 정해져 있음
 -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에 대해 매년 실시되어야 하는 총 검사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총 검사 횟수는 다시 각 주의 주민 수에 따라 검사 건수의 비율이 정해짐
 - 매년 전국적으로 총 9,000건의 식품 검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그 중 7,000건의 검사는 '모니터링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소비 식품에 대해 실시하며, 2,000건의 식품 검사는 프로젝트 모니터링 검사에서 실시함
- (샘플 채취·준비·분석) 샘플 채취·준비·분석은 식품통제에 관한 유럽규정(EG) No 882/2004의 요건을 준수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함

18) 상세 내용은 '해외 주요국 국가주도 유해물질 모니터링 운영 현황(식품안전정보원, 2017.5)' 44페이지 이하 참고

-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매년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모니터링 핸드북'19)을 제작하여 배포함
 - 모니터링 핸드북에는 식품유형별 샘플 채취량과 샘플 준비·보관·분석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음
- (평가 및 보고)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각 주로부터 모니터링 데이터를 취합하여 평가를 위해 연방위해평가원(BfR)에 전달하고, 매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발표함
- (운영 사례) 2018년도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검사되는 식품 종류와 성분은 다음과 같음20)

<표 I -2> 독일, 2018년도 모니터링 계획

모니 터링 대상 식품	식물 유래	건조 해조류, 살구, 가지, 바나나, 브로콜리, 건조 대추, 영유아용 곡물 보충식(분말), 볶은 커피(분말), 차 및 차 유사제품, 아마씨, 올리브오일, 두부, 수박 등
	동물 유래	알래스카 연어(냉동 포함), 버터, 까망베르, 브리, 고르곤졸라, 소고기 분쇄육(냉동 포함), 달걀, 홍합 및 홍합제품, 새우, 칠면조 고기, 요거트, 참치 등
모니터링 대상 성분 및 미생물		식물보호제, 해충제거제 및 표면처리제
		독성 반응 생성물(toxic reaction products)
		식품 중 유기 오염물질(다이옥신, PCB, PFAS, PAHs 등)
		화장품 및 생활용품 중 유기물질 (가소제, 방향족 아민, 니트로사민, 보존제 등)
		약리작용 물질
		자연독소
		원소(납, 카드뮴, 수은, 알루미늄, 요오드, 셀레늄, 나트륨, 마그네슘 등)
		질산염, 아질산염 및 기타 무기 화합물
프로젝트 모니터링		프로젝트 1: 대두의 제랄레논(zearalenon)
		프로젝트 2: 차(tea)의 피롤리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프로젝트 3: 부분 발효된 포도즙의 식물보호제
		프로젝트 4: 건조 해조류 중 원소(elements)

19) Handbuch Monitoring 2018 확인:

https://www.bvl.bund.de/DE/01_Lebensmittel/01_Aufgaben/02_AmtlicheLebensmittelueberwachung/04_Monitoring/lm_monitoring_node.html#doc1399894bodyText10

20)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모니터링에 대한 안내,

(https://www.bvl.bund.de/DE/01_Lebensmittel/01_Aufgaben/02_AmtlicheLebensmittelueberwachung/04_Monitoring/lm_monitoring_node.html#doc1399894bodyText10)

(3) 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유통식품 관리

□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임시적 조치

- 유럽규정(EC) No 178/2002 제7조 제1항의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회원국은 가용 정보의 평가에 따라 건강에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임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임시 조치는 공동체에서 선택한 높은 수준의 건강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과학적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으나, 적정한 기간 내에 검토되어야 함
 - 임시 조치는 비례적이어야 하는데, 기술적, 과학적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공동체에서 선택한 높은 수준의 건강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 식품 중 오염물질에 관한 유럽규정(EEC) No 315/93²¹⁾ 제4조에 따라 회원국은 신규 정보나 기존 정보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식품 중 오염물질이 보건 상 위험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시 조치할 수 있음
 - 식품의 오염이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할지라도 자국 영토 내에서 문제가 되는 규정의 적용을 임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임시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집행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즉시 알려야 함

□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공식 통제

- 공식 통제에 관한 유럽규정(EU) No 2017/625 제9조에 따라 회원국의 식품감시당국은 리스크 중심의 공식 통제를 실시하는데, 이때 확인된 리스크뿐만 아니라 식품의 종류, 성분, 조합, 함량, 품질유지기한, 원산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모든 정보가 고려됨
 - 2008년 12월 중국산 면의 알루미늄 함량과다에 대한 RASFF²²⁾ 통보 이후 EU는 수입식품에 관한 유럽규정(EC) No 669/2009²³⁾을 통해 중국산 건조 면 수화물의 10%에 대해 알루미늄을 검사할 것을 정하였음

21) COUNCIL REGULATION (EEC) No 315/93 of 8 February 1993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for contaminants in food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1993R0315&from=EN>)

22)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23)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69/2009 of 24 July 2009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increased level of official controls on imports of certain feed and food of non-animal origin and amending Decision 2006/504/EC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194:0011:0021:EN:PDF>)

- 독일 바덴뷔템베르크주는 EU의 수입식품 검사 강화 규정과 별도로 시중에 유통 중인 아시아산 면류의 알루미늄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 2012년 검사 결과 총 174개 면류 샘플 중 중국산 샘플 2개에서만 알루미늄 함량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양 이상으로 검출되어 EU에서 승인되지 않은 알루미늄 함유 첨가물이 사용된 것으로 평가되었음²⁴⁾

(4) 유통식품에 관한 검사명령 제도

- 독일 「식품사료법(LFGB)」 제39조 제2항에 따라 식품감시당국은 감시 활동을 통해 식품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위반에 대한 충분한 의심 또는 확인된 위반 사항을 제거하며, 건강 위험 및 기만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특히 제품을 제조, 취급 또는 유통시킨 사람 또는 이를 의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또는 검사를 의뢰하게 하고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품의 유통을 임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음

24) 독일 바덴뷔템베르크주 식품 및 수의약품 검사청(CVUA), 면제품의 알루미늄에 대한 안내
(http://www.cvuas.de/pub/beitrag.asp?subid=2&Thema_ID=11&ID=1719&lang=DE&Pdf=No)

1. 개요

- 일본의 수입식품 관리 총괄은 후생노동성에서 담당하며, 통관 이후의 일본 내 수입식품 유통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등에서 필요에 따라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며 관리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제23조에 근거해 매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정하며,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의 생산 단계에서 수입 후의 일본 내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동 법 제24조에 근거해 도도부현 등은 지역 실정에 맞게 식품(수입식품 포함) 관련 감시지도 실시에 관한 계획을 정하고, 이를 후생노동성 장관 및 내각 총리대신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2. 근거법령

- 일본 「식품위생법」²⁵⁾
 - (개요)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규제, 기타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으로, 음식에 기인한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수입식품의 유통관리에 대해서는 제23조에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제24조에 도도부현 등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일본 후생노동성 고시 「식품위생에 관한 감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지침」²⁶⁾
 - (개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중앙 정부 및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감시지도 실시에 관한 지침임
 - (주요 내용) 수입식품 감시와 관련한 역할분담, 감시지도 실시 체제, 수입식품감시 지도계획의 책정 및 감시지도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25) 일본 식품위생법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233&openerCode=1)

26) 후생노동성 고시 「식품위생에 관한 감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지침」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78aa5248&dataType=0&pageNo=1)

○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문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27)

- (개요)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해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동 계획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의 생산 단계에서 수입 후의 일본 내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주요 내용) 생산지의 사정 및 그 외 사정으로부터 보아 중점적인 감시지도를 실시해야 할 항목에 관한 사항, 수입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자주적인 위생 관리 실시 관련 지도에 관한 사항, 기타 감시지도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3. 수입식품 유통관리 기관

(1) 중앙 행정기관

○ 후생노동성

- 식품위생법²⁸⁾ 제23조와 관련하여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상황에 대해서 공표하며, 식품위생법 제23조의 2와 관련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감시지도 실시에 관한 지침’ 고시를 소관함
- 후생노동성 고시 ‘식품위생에 관한 감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 시 감시지도 및 식품 등의 수입자에 대한 감시지도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함²⁹⁾
- 또한 도도부현 등의 수거검사, 판매자 등의 자주검사 등으로 일본 내 유통되는 수입식품 등의 법 위반 관련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검역소에 법 위반 식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정보에 근거한 수입 시 검사 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³⁰⁾
- 수입식품 등에 기인하는 건강피해 정보가 있는 경우, 피해 확대 방지 관점에서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에 대해서 도도부현 등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³¹⁾

27)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 ‘2018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du/0000162160_1.pdf)

28) 일본 식품위생법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233&openerCode=1)

29) 후생노동성 고시 「식품 위생에 관한 감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지침」

30)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 ‘2018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du/0000162160_1.pdf)

31)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 ‘2018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du/0000162160_1.pdf)

○ 소비자청

- '식품위생에 관한 감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감시지도 관련 역할 분담에 있어 소비자청은 식품표시 소관 입장에서 도도부현과 연계에 노력해야 한다는 역할이 언급되어 있음³²⁾

(2) 지방 행정기관

○ 도도부현

- 식품위생법 제24조에 근거해 도도부현 등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상황에 대해서 공표하며, 이 감시지도계획에는 수입식품 유통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식품 위생에 관한 감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등의 감시지도 및 일본 내의 식품 등 사업자에 대한 감시지도는 도도부현이 실시함³³⁾

4. 주요 내용

(1) 수입식품유통관리 제도 및 계획

□ 근거 법령 등

○ 식품위생법³⁴⁾

- 식품위생법 근거 후생노동성 고시 '식품위생에 관한 감시지도 실시에 관한 지침'
- 식품위생법 제23조 근거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 식품위생법 제24조 근거 도도부현 등의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

□ 수입식품 감시 체제³⁵⁾

- 크게 수출국 대책, 수입국 대책, 일본 내 대책으로 나뉘며 유통 관련 대책은 각 지방 도도부현 등이 필요에 따라 도도부현 감시지도 계획에 근거해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함

32) 후생노동성 고시 「식품 위생에 관한 감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지침」

33) 후생노동성 고시 「식품 위생에 관한 감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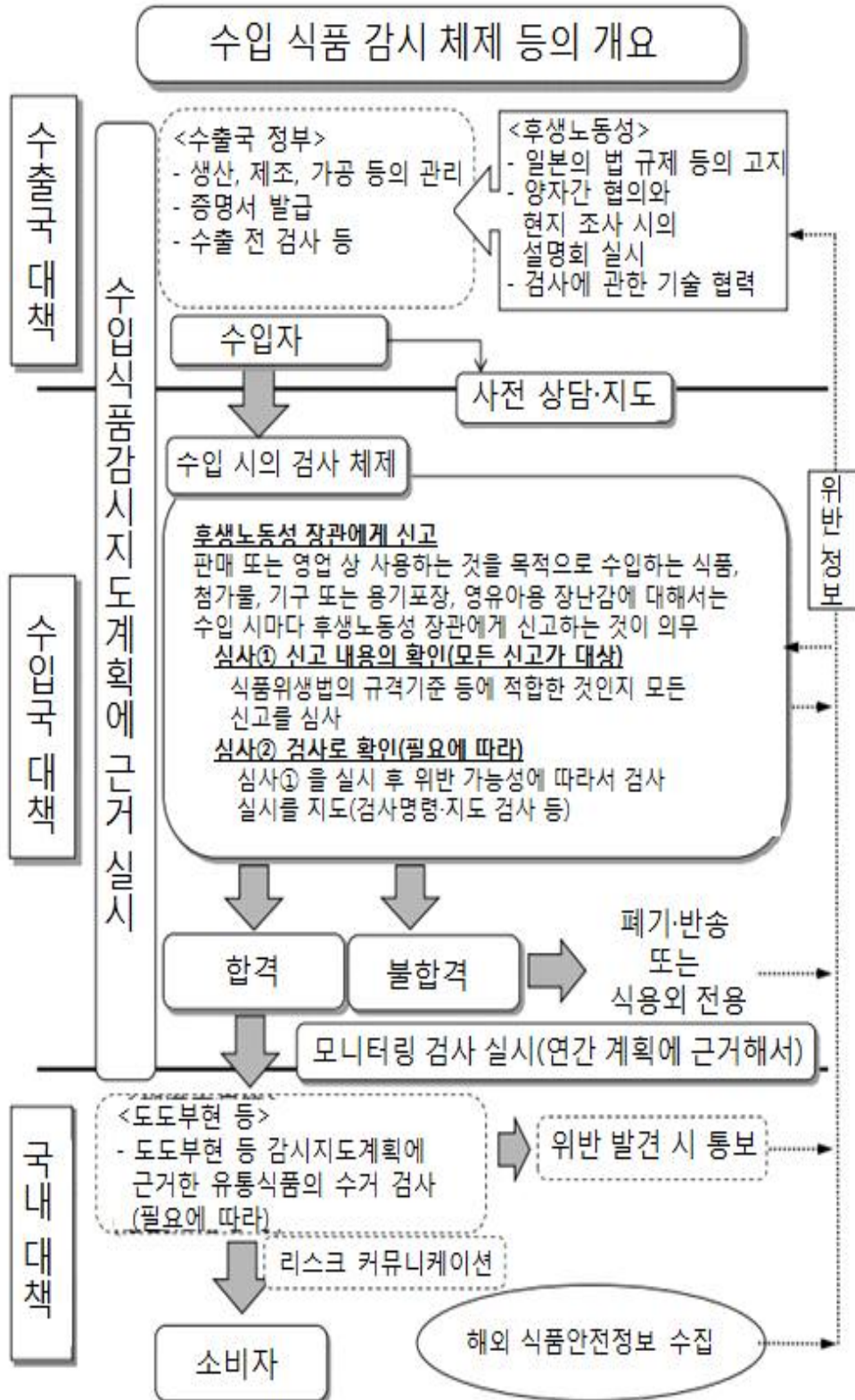
34) 일본 식품위생법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233&openerCode=1)

35) 후생노동성, 2016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 근거한 감시지도 결과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du/0000176078.pdf>)

<그림 II-1> 일본, 수입식품 감시 체제 등의 개요



□ 도쿄도 수입식품 위생 감시지도³⁶⁾

○ 개요³⁷⁾

- 도쿄도의 경우 매해 도쿄도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일본 내 생산 식품뿐 아니라 수입식품도 포함해 실시하고 있음

○ 기본 방침³⁸⁾³⁹⁾

- 도쿄도는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 내에 출입검사, 식품 등의 검사,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에 대한 대응, 출입검사 또는 수거검사로 발견된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해 도쿄도내에 유통되는 식품 등 및 식품 등 사업자에 대한 감시지도를 실시하는 것임

<표 II-1> 도쿄도, 2018년도 검사 관련 감시지도 기본 방침

구분	내용
출입검사	<p><감시지도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등으로 정한 규격 또는 기준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 철저한 엄수를 지도함 - 또 식품군별로 식품 체인의 각 단계에 따라 중점감시 항목을 정한 '식품 공급행정 등의 각 단계의 감시지도 항목'을 바탕으로 감시지도를 실시함 <p><실시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식중독 발생상황, 위반 또는 고충의 발생 이력, 취급 식품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출입검사 실시 예정 횟수 계획'에 근거해 식품 등 사업자의 시설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함 - 특히 식중독을 발생시킨 시설에 대해서는 발생 후 1년 간 12회 이상 출입검사를, 위반식품의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위반 확인 후 1년 간 4회 이상, 고충 발생 후 1년 간 3회 이상 각각 출입검사를 실시함
식품 등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식품 등을 배제하고, 식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위반 등 발견 상황, 식품의 특성,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규격기준의 정비 상황 등을 바탕으로 '실시 예정 개수 계획'에 근거해 수거 검사⁴⁰⁾ 등을 실시함

36)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대표적으로 도쿄도의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의 수입식품 해당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함

37) 도쿄도, 2018년도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
(http://www.metro.tokyo.jp/tosei/hodohappyo/press/2018/03/28/documents/14_02.pdf)

38) 도쿄도, 2018년도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
(http://www.metro.tokyo.jp/tosei/hodohappyo/press/2018/03/28/documents/14_02.pdf)

39) 도쿄도는 감시지도 실시에 관한 기본 방침에 있어, 수입식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40) 식품위생법 제28조 제1항 및 식품표시법 제8조 1항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식품 등의 검사를 말함. 식품위생감시원은

<표 II-2> 도쿄도, 2018년도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에 대한 대응

구분	내용
<p>출입검사 및 수거검사로 발견된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에 대한 대응</p>	<p><위반 발견 시의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검사로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는 즉각적으로 개선을 지도함 - 또 위반이 경미해 즉각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것 이외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생지도 주의표 등으로 개선 지도를 실시하고,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해서 출입검사를 실시함 - 수거 검사로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 식품 등을 수거한 식품 사업자에 대해 해당 식품 등이 판매용으로 제공되거나 영업 상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후생노동성과 소비자청, 농림수산성, 관계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폐기와 회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신속하게 시장으로부터 제거함. 해당 법 위반 식품 등의 제조소, 수입자 등이 구 혹은 시(區市), 도나 부, 현(道府縣) 등에 있는 때는 관할 자치단체에게 신속하게 통보함 - 이러한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필요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28조 또는 식품표시법 제8조에 근거해 식품 등 사업자로부터 문서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식품 등 사업자의 개선 조치 상황 확인 및 기록을 적절하게 실시해 확실한 개선을 도모함 - 또 필요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54조, 제55조, 제56조 또는 식품표시법 제6조에 근거한 처분을 실시함. 특히 악질사례에 대해서는 고발을 실시함 <p><공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6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 위반한 자의 명칭, 대상식품, 대상시설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복지보건국 건강안전부 식품감시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등으로 공표하고 식품위생법 상의 리스크 상황을 밝힘 - 그 외 식품표시법 제7조에 근거해 공표를 실시함 - 또 관계 법령에 근거해 후생노동성 및 소비자청 등에 필요한 통지를 실시함
<p>도민으로부터 접수된 정보에 대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안전성 관련 사안으로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된 이물 혼입, 곰팡이 발생 등의 고충, 표시에 관한 이의 등의 정보 등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원인 규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재발방지와 건강 피해 확대 방지에 대한 적절한 지도 등을 실시함 - 또 식품 등 사업자가 도민 등으로부터 건강피해로 연결될 우려를 부정할 수 없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보건소 등으로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지도함
<p>식품 등 사업자의 자진회수에 대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등 사업자 스스로가 식품 등의 회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쿄도 식품안전조례에 근거한 자진회수보고제⁴¹⁾에 의해 보고하게 하는 것 등으로 사업자에 의한 자진 회수 정보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파악해 회수 상황을 확인함

필요에 따라 식품관련 영업자로부터 시험에 필요한 양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이 가능함

41) 식품 등의 생산자, 제조자, 수입자 등이 건강에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관점에서 식품 등을 자진 회수하는 경우에 도쿄도에 보고를 의무화한 제도. 도쿄도에서는 보고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도민에게로의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음

○ 도쿄도 수입식품 관련 대책⁴²⁾

- 일본의 경우 식량 자급률은 2016년도 기준 38%(칼로리베이스)로, 일본 내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쿄도내 유통되는 수입식품도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도는 수입식품 유통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 2018년도의 수입식품 검사 계획은 4만 5천 건이며, 수입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 등 검사, 유전자변형 식품 관련 감시지도, 수입 농산물 등의 방사성물질 검사, 수입 사업자의 자주관리 추진, 수입식품 등 사업자 위생 강습회, 검사법의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수입식품 등의 검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화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 수입 실적과 위반 실적 등을 바탕으로 감시계획을 책정하고 효과적·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검사법의 연구개발 등의 대책을 실시함
- 수입사업자의 자주관리 추진과 관련해서는 수입사업자의 실적에 따라 자주 관리를 지원하고, 수입식품 관련 사업자 위생 강습회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함

<표 II-3> 도쿄도, 2018년도 수입식품 검사 실시 중점 사항

구분	내용
수입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 등 검사	수출국의 농약 등 사용 상황은 법 규제, 기후, 풍토 등의 차이로 일본과 다른 경우가 있음. 이러한 수출국의 사정 및 검역소에서 발견된 위반 사례, 수입 실적 등을 감안해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잔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검사를 실시함
유전자변형 식품 관련 감시지도	유전자변형 작물일 가능성이 있는 대두와 옥수수 등의 수입 농작물 및 이것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분별생산유통관리(IP핸들링)의 적절한 실시에 대해서 감시지도함과 동시에 안전성 미심사 유전자변형 작물의 혼입과 유전자변형 식품 관련 표시 미비 등이 없도록 검사를 실시함
수입 농산물 등의 방사성물질 검사	1986년 4월, 구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유럽을 중심으로 자연 환경과 식품 등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됨. 지금까지도 여러 번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입식품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입 농산물을 중심으로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함
수입사업자의 자주관리 추진	수입 사업자에 대해서 출입검사를 실시해 수출국 등의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과 종업원의 위생교육, 위생관리 체제 등의 자주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그 대응 상황에 따라 지도를 실시해 수입 사업자의 자주 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함
수입식품 등 사업자 위생 강습회	수입식품 위반사례, 법령 개정의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함과 함께 법령에 근거한 제도에 대해서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입 사업자의 자질 유지 향상을 도모함
검사법의 연구 개발	수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서 검사법의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수입식품 검사 체제를 확충함

42) 도쿄도, 2018년도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

(http://www.metro.tokyo.jp/tosei/hodohappyo/press/2018/03/28/documents/14_02.pdf)

○ 도쿄도의 수입식품 감시지도 항목⁴³⁾

- 식품 등의 수입자에 대한 감시지도를 실시 할 때에 <표 II-4>와 같은 항목에 중점을 두고 감시지도를 실시

<표 II-4> 도쿄도, 2018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 항목

내용
① 원산국의 생산정보(사용 농약, 첨가물 등)의 수집을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
② 식품의 특성에 따른 자주검사 실시 등으로 안전성 확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
③ 적정한 일문 표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
④ 식품의 특성에 따라서 잔류농약, 지정 외 첨가물 등의 검사를 실시

○ 도쿄도 식품위생 감시지도 실시 결과⁴⁴⁾⁴⁵⁾

- 2017년도의 경우, 수입식품 사업자에 대해 전문 감시팀이 256곳의 감시지도를 실시하였고, 그 외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44,986항목의 수거검사를 실시함
- 그 결과 6개 항목(6개 검체)의 법 위반을 발견해 시장으로부터의 신속한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

43) 도쿄도, 2018년도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
(http://www.metro.tokyo.jp/tosei/hodohappyo/press/2018/03/28/documents/14_02.pdf)

44) 결과에 대해서는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45) 도쿄도, 2017년도 도쿄도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 실시 결과
(http://www.metro.tokyo.jp/tosei/hodohappyo/press/2018/06/26/documents/08_03.pdf)

<표 II-5> 도쿄도, 2017년도 수거검사로 발견된 위반 수입식품

연 번	위반내용	분류	일반명칭	검사결과	비고(행정 조치 내용 등)
1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농약 등의 잔류 기준 위반		스냅 완두(태국)	잔류기준 위반 (프로피코나졸)	수입자를 소관하는 자치단체에 통보
2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	농산물 및 그 가공품	건조 과일 (미국)	첨가물의 사용기준 위반(이산화황)	
3	첨가물의 사용 기준 위반		건조 과일 (미국)	첨가물의 사용기준 위반(이산화황)	
4	<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 잔류 농약의 일률기준 위반		냉동 그린피스 (폴란드)	잔류 기준 위반(일률기준) (Thiacloprid)	
5	<식품표시법 제5조> 첨가물 표시 없음	기타 식품	조미료 (태국)	표시에 기재 없음 (아세실펜칼륨 검출)	
6		육류·난 류 및 그 가공품	가열 식육제품(가열 후 포장)(중국)	표시에 기재 없음 (아스코르브산 검출)	

- 또한 수입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 등 검사,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감시지도, 수입 농산물 등의 방사성물질 검사, 수입자의 자주 관리 추진, 수입식품 관련 사업자 위생 강습회, 검사방법의 연구 개발 등을 실시함

<표 II-6> 도쿄도, 2017년도 수입식품대책 실시 결과

구분	내용
수입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 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국에서의 농약 등의 사용 상황, 검역소에서 발견된 위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12,572항목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 축수산물 등에 대해서 3,759항목의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실시함 -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냉동 그린 피스(green peas) 등, 2개 항목(2개 검체)의 법 위반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
유전자변형 식품 관련 감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에 유통되는 쌀 가공품, 옥수수 등 77개 검체에 대해서 안전성 미심사 유전자변형체의 검사를 실시함. 그 결과 검출되지 않았음 - 또한, 유전자변형 식품을 포함한 식품에 필요한 표시가 적절하게 실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 108개 검체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함. 그 결과 22개 검체로부터 안전성심사필 유전자변형 식품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분별생산유통관리(IP핸들링)의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 검체에서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어 표시를 위반한 식품은 없었음
수입 농산물 등의 방사성물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에 유통되는 수입식품 100개 검체(내역: 채소·과실 및 그 가공품 55개 검체, 곡류·두류·서류·버섯류 및 그 가공품 12개 검체, 수산물 및 그 가공품 16개 검체, 유제품 4개 검체, 육류·난류 및 그 가공품 4개 검체, 기타 가공식품 9개 검체)에 대해서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함 -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없었음
수입사업자의 자주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에 의한 자주적인 위생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수입자 180곳에 대해 출입을 하여 사고 발생 시 대응 등의 관리 체제를 파악하고 대응 상황에 따른 지도를 실시함
수입식품 등 사업자 위생 강습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의 자질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2017년 10월에 수입 식품 관련 사업자 위생강습회를 개최하고, 425명이 수강함
검사법의 연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서 검사방법의 연구개발을 실시함 - 지정외 첨가물 2개 물질, 농약 3개 물질, 동물용의약품 1개 물질에 대한 검사법을 검토하고 새로운 검사법을 확립함

(2) 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유통식품 관리

□ 근거 법령 등

○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문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⁴⁶⁾

- 해외 식품안전정보에 근거한 긴급 대응과 관련된 내용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주요 내용

○ 해외로부터의 문제 발생 정보 등에 근거한 긴급 대응⁴⁷⁾

- 후생노동성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로부터 식품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함

*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국립감염증연구소, 수출국 정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식품안전정보네트워크(INFOSAN) 등

- 조사 결과, 일본으로의 법 위반 식품 등의 수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검역소 또는 도도부현 등에게 그 유통 상황 및 재고 상황 조사, 필요에 따른 수입자 등에 대한 검사, 회수 등을 지도하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검역소 검사 강화를 지시하고 대응 상황에 대해서 공표함

○ 사후조치⁴⁸⁾

- 후생노동성은 해외로부터의 식품안전문제 발생정보 등에 근거해 긴급대응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 2016년도에는 후생노동성,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등에서 수집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식중독 발생정보와 위반 식품의 회수 등의 정보에 근거해 수입 실적 확인을 실시함
- 그 결과에 따라 미국산 냉동 채소 및 냉동 과실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오염 우려, 미국산 꼬시래기의 살모넬라속 균 오염 우려, 브라질산 닭고기의 식육검사 부정 등에 대해서 수입 시의 감시체제 강화 및 국내 유통 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와 수입 신고 보류 등의 조치를 지시함

46)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 '2018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u/0000162160_1.pdf)

47) 일본 후생노동성, 2018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u/0000162160_1.pdf)

48) 후생노동성, 2016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 근거한 감시지도 결과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u/0000176078.pdf>)

<표 II-7> 일본, 2016년도 해외 정보에 근거해 실시한 주요 감시 강화 사례

강화 시기	대상국	대상 식품 및 내용	경위 및 대응 상황
2016년 5월	미국	냉동 채소 및 냉동 과실(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오염 우려)	미국에서 냉동 채소 및 냉동 과실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 회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회수 대상 제품이 수입 신고된 경우에는 반송 등을 실시하는 조치를 강구
2016년 12월	미국	꼬시래기(오고노리, オゴノリ)(살모넬라속균 오염 우려)	미국에서 꼬시래기가 살모넬라속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 회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회수 대상 제품이 수입 신고된 경우에는 반송 등을 실시하는 조치를 강구
2017년 3월	브라질	닭고기 등(식육검사 부정)	브라질에서 식육검사 부정행위에 관련된 일부 시설이 조업 중지 또는 특별 검사 대상이 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대상 시설의 제품이 수입 신고된 경우에는 수입 절차를 보류하고 대상 시설 이외의 제품이 수입 신고된 경우에는 수입 시의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강구

* 일본은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해 3월에 끝나기 때문에 2017년 3월도 2016년도에 해당함

1. 개요

- 중국은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유통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수입식품을 포함한 유통단계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 해당 행정구역에 대한 유통단계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 「식품안전법」 제95조에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관리감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위해 유통단계 식품샘플검사, 식품판매에 대한 일상감독조사, 수입식품 안전정보 수집, 수입식품 리스크조기경보 및 통제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유통단계 식품샘플검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입식품을 포함한 내수식품 전반에 대해 샘플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결과를 대외 공개하고 있음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 발표한 ‘2018년 식품안전 샘플검사 계획’에서는 총국 임무(총국이 진행하는 내수식품 샘플검사)로서 일부 품목*에 대해 온라인식품과 수입식품을 일정량 검사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 곡류가공품, 식용유/유지 및 그 제품, 유제품, 음료, 포도주, 과자, 볶은식품 및 견과제품 등
 - (식품판매에 대한 일상감독조사) 식품판매자의 자격, 부적합식품의 회수, 라벨과 설명서, 특수식품과 수입식품의 판매, 식품안전사고 처리 등 상황에 대해 일상감독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기한 내 시정,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함
 - (수입식품안전정보 수집) 해관총서 및 그 직속기관, 각 지역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리스크 연구를 통해 정보등급과 관리조치를 정함
 - (수입식품 리스크조기경보 및 통제조치) 수입식품안전정보 중 위험정보의 등급에 따라 리스크조기경보 및 통제조치를 취하고, 리스크가 사라지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했을 때 리스크조기경보와 통제조치를 해제함

2. 근거 법령

○ 「식품안전법」 49)

- (주요 내용) 유통단계 식품샘플검사, 수입식품 유통관리, 수입식품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 수입식품안전정보 수집, 식품판매에 대한 감독조사 등

○ 「식품안전 샘플검사 관리 방법」 50)

- (적용 범위)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 조직, 실시하는 식품안전 샘플검사와 리스크 모니터링의 샘플검사에 적용
- (주요 내용) 식품안전 샘플검사 계획, 샘플 수거, 검사, 결과처리, 법률책임 등

○ 「식품생산경영 일상감독조사 관리 방법」 51)

- (적용 범위)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 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 등 이행상황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적 감독조사에 적용
- (주요 내용) 감독조사 사항, 감독조사 요구, 법률책임 등

○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 52)

- (적용 범위) 수출입식품의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
- (주요 내용) 식품수입, 식품수출, 리스크조기경보 및 관련조치, 법률책임 등

○ 「수출입식품 안전정보 및 리스크조기경보 관리 실시세칙」 53)

- (적용 범위) 수출입식품 안전정보와 리스크조기경보 관리에 적용
- (주요 내용) 수출입식품 안전정보 관리, 리스크조기경보 및 통제조치, 감독관리 등

49)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npc/cwhhy/12jcwh/2015-04/25/content_1934591.htm)

50) 식품화반넷 식품법규센터 (<http://law.foodmate.net/show-185606.html>)

51) 식품화반넷 식품법규센터 (<http://law.foodmate.net/show-188314.html>)

52) 식품화반넷 식품법규센터 (<http://law.foodmate.net/show-173672.html>)

53) 식품화반넷 식품법규센터 (<http://law.foodmate.net/show-174997.html>)

3. 수입식품 유통관리 기관⁵⁴⁾

(1) 중앙 행정기관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총국')
 - 유통단계 식품안전 샘플검사
 - 전국성(全國性) 식품안전 샘플검사 연간계획 및 지도규범 제정
 - 전국성 식품샘플검사 실시
 -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의 식품샘플검사 실시 지도
 - 전국 식품경영(판매)에 대한 일상감독조사 지도 및 감독
-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 전국 수출입식품안전정보 관리 및 리스크조기경보 관리 업무 주관
 - 수출입식품안전정보 수집, 정리

(2) 지방 행정기관

- 각 지역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 해당 행정구역에 대한 유통단계 식품안전 샘플검사
 - 행정구역의 연간 식품안전 샘플검사 업무방안 제정
 - 행정구역 식품샘플검사 마련
 -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 조직한 식품안전 샘플검사 실시
 - 해당 행정구역에 대한 식품경영 일상감독조사
 - 행정구역 내 식품경영 일상감독조사업무 지도 및 감독(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 행정구역 내 식품경영 일상감독조사 실시(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 각 지역 출입국검사검역기구
 - 관할구역 내 수출입식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정리, 리스크조기경보 실시
 - 상급기관에서 지정한 수출입식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정리

54) 중국 국무원의 조직개편('18.3)으로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식약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이 통폐합됨에 따라, 유통단계 식품 안전 관리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담당하고,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는 '해관총서'에서 담당하게 됨('18년 8월 현재, 홈페이지 개편, 업무 조정 등 세부적인 조정이 진행 중)

4. 주요 내용

(1) 유통단계 식품샘플검사

○ 「식품안전법」 제87조

제87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 반드시 식품에 대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샘플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공포해야 하며, 검사 면제를 할 수 없음. 샘플은 반드시 구입 수거해야 하며, 동법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함. 식품 생산·경영자에게 검사 비용과 기타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 됨

- 「식품안전 샘플검사 관리 방법」, 「국가 식품안전 감독 샘플검사 실시세칙(2018년⁵⁵)」, 「2018년 식품안전 샘플검사 계획⁵⁶」 등

□ 세부 내용

○ 계획 수립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이 '전국성 식품안전 샘플검사 연간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샘플검사 연간계획을 제정(검사계획은 식품 생산·경영활동 전 과정을 포함)
- 검사계획에는 ①검사품목, ②샘플수거단계, 샘플수거방법, 샘플수거수량 등 샘플 수거요건, ③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근거 등 검사업무요건, ④검사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보고방식 및 기한, ⑤법률,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기타요건 등 포함
- 검사계획의 중점식품은 ①리스크가 높고 오염수준이 증가추세에 있는 식품, ②유통범위가 넓고 소비량이 많으며 소비자 제보(신고)가 많은 식품, ③리스크 모니터링, 감독조사, 특별단속, 사건사고조사, 긴급대응처리 등에서 비교적 큰 잠재적 위험요인이 드러난 식품, ④영유아, 임신부, 고령자 등 특정계층 전용 식품, ⑤학교 및 탁아소(유아원) 식당, 관광단지 외식서비스업체, 센트럴키친(Central Kitchen), 단체급식배송업체에서 경영하는 식품, ⑥관련 당국에서 공포한 비식용물질 불법첨가 가능성이 있는 식품, ⑦이미 해외에서 건강상 리스크를 야기했고 국내에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식품, ⑧이밖에, 반드시 샘플검사를 해야 하는 기타 중점식품

55) 식품화반넷 식품법규센터 (<http://law.foodmate.net/show-193109.html>)

56) 식품화반넷 식품법규센터 (<http://law.foodmate.net/show-193033.html>)

○ 샘플 수거

- (수거 방식) 샘플은 반드시 '유상 수거'로 진행하고, 식품경영자 창고와 경영하는 식품에서 '무작위 수거'할 수 있음(식품경영자가 직접 샘플 제공 불가)
- (수거량) 원칙적으로 검사와 재검사를 만족시키는 수량 수거

○ 샘플 검사

- (검사항목과 검사방법) 식품안전표준 등에서 규정한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을 반드시 따르되, 리스크모니터링, 사건사고조사, 긴급대응처리 등의 샘플검사에서는 국가 또는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의 동의하에 식품안전표준 등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
- (검사 완료) 검사기관은 샘플수령 후 20일 내에 검사보고서 제출

○ 결과 처리

- (결과 보고) 검사기관은 검사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내(합격인 경우), 2일 내(불합격인 경우)에 샘플검사를 조직 또는 위탁한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 검사결과 보고함
 - 샘플검사 결과에서 불합격 식품이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과 검사기관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즉각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함
 - 현금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서 마련한 샘플검사의 검사결과에서 불합격 식품에 비식용물질이 불법 첨가되었거나, 병원성 미생물, 잔류 농약, 잔류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기타물질이 심각하게 기준 초과되는 등 정황이 확인되면, 반드시 단계별로 총국까지 보고해야 함
- (재검사 신청) 검사받은 식품생산·경영자와 제품에 표시된 식품생산자는 검사 불합격 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서면으로 재검사 신청서 제출
- (불합격식품 처리) 식품생산·경영자는 검사 불합격 결과를 수령한 후, 즉각 문제 식품의 재고봉인, 생산·판매·사용 중단, 회수 등 조치를 취해 식품안전리스크 통제, 문제발생의 원인 파악 및 시정, 소재지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 조치사항 신속보고를 해야 함
- (결과 공개) 국가 및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 반드시 샘플검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대외 공개해야 함
 - 대외 공개되는 샘플검사 불합격 정보에는 식품명칭, 규격, 생산일자 또는 로트 번호, 불합격 항목, 검사식품에 표시된 생산자 명칭, 상표, 주소, 경영자 명칭, 주소 등 내용 포함

<표 III-1> 중국, 중국의 2018년 식품안전 샘플검사 계획

구분	중국 임무
검사수량	2.85만 건(계획검사 2.05만 건, 특별검사 0.8만 건)
검사대상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중점식품기업,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큰 대형도매시장 ② 영유아조제식품, 유제품, 육제품, 음료, 주류, 식용농산물 등 30대 식품(대분류) ③ 곡류가공품, 식용유/유지 및 그 제품, 유제품, 음료, 포도주, 과자, 볶은 식품 및 견과제품 등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온라인식품과 수입식품 검사 ④ 원단(양력 설), 춘절(음력 설), 원소절(정월대보름), 단오절, 중추절(추석) 등 명절 전에는 명절성수식품 검사 ⑤ 여론 모니터링, 일상적 관리감독 등에서 반영된 문제에 대해 특별검사 실시 (매월 검사) 영유아조제분유 생산기업 제품 (매분기 검사) 온라인식품, 수입식품, 제철 식용농산물 (6개월마다 검사) 중국에서 중점 검사하는 식품생산기업 제품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별검사의 시기와 빈도를 정함
검사시기 및 빈도	
샘플수거 장소	전국 유통단계에서 검사 샘플을 구입 (샘플수거장소는 주로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 체인마트, 대형 쇼핑몰 등, 온라인식품은 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 운영 결과

- (검사 결과) 중국 및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각자 시행한 샘플검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 생산기업 명칭 및 주소, 샘플수거장소 업체명칭 및 주소, 샘플명, 규격, 상표, 생산일자, 부적합항목, 검사결과, 기준치, 검사기관 등 정보 공개
 - * 2018년 1~7월 중국이 부적합 조치한 유통단계 수입식품은 총 46건 (체코 8건, 말레이시아 7건, 미국 6건, 대만 5건, 독일 5건, 필리핀 5건, 스페인 4건, 일본 2건, 러시아 1건, 이탈리아 1건, 인도네시아 1건, 포르투갈 1건)
- (검사상황 분석) 중국 및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월별·분기별·반기별 샘플검사 결과를 분석한 상황분석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
 - 중국은 분기별로 식품안전 샘플검사 상황 분석 자료를 공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샘플검사를 통해 발견된 주요 문제점, 식품품목별 샘플검사수량, 합격 및 불합격 샘플수량, 샘플합격률 등임

「총국, 2018년 1/4분기 식품안전 샘플검사 상황 분석에 관한 통고⁵⁷⁾」의 주요내용

- 2018년 1/4분기 전국 식품(보건식품, 식품첨가물 포함) 샘플 432,709건의 샘플검사 결과, 합격 샘플은 421,558건, 불합격 샘플은 11,151건으로 전체 합격률은 97.4%였음
- 곡물가공품, 식용유지류, 육제품, 알제품, 유제품 등 주요 일상소비품의 샘플 합격률은 모두 평균 수준보다 높았음
- 샘플검사를 통해 발견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①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 위반 사용, 기준치 초과 사용 문제가 전체 불합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0%, 전년 동기 대비 0.1%p 감소
 - ② 식품 중 미생물 오염 문제가 전체 불합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 전년 동기 대비 1.3%p 감소
 - ③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 문제가 전체 불합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6%, 전년 동기 대비 6.6%p 증가
 - ④ 식품 중 품질지표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전체 불합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 전년 동기 대비 3.9%p 감소
 - ⑤ 식품 중 중금속 등 원소 오염 문제가 전체 불합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 전년 동기 대비 0.6%p 증가
 - ⑥ 식품 중 비식용물질 검출 문제가 전체 불합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전년 동기 대비 0.2%p 감소
 - ⑦ 식품 중 생물독소 오염 문제가 전체 불합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전년 동기 대비 1.0%p 증가

57)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http://samr.saic.gov.cn/tg/201804/t20180428_273988.html)

(2) 식품판매에 대한 일상감독조사

□ 관련 법령 등

○ 「식품안전법」 제110조

제1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과 품질감독당국은 각자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면서, 다음 조치를 취하여 생산·경영자의 동법 준수 상황을 감독조사할 권리가 있음

- (1) 생산·경영장소에 진입하여 현장조사 실시
- (2) 생산·경영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에 대하여 샘플검사 진행
- (3) 관련 계약서, 영수증, 장부,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 (4)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증거 또는 안전위험요인이 있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을 조사 봉인, 압수
- (5) 불법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장소의 강제 폐쇄

○ 「식품안전 샘플검사 관리 방법」, 「식품생산경영 일상감독조사 관리 방법」 등

□ 세부 내용

○ 계획 수립

-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 식품유형, 기업규모, 관리수준, 식품안전상황, 신용과일기록 등 요소를 고려하여 '연간 일상감독조사계획'을 정함
 - * 계획에는 조사사항, 조사방식, 조사빈도, 샘플검사 식품종류, 검사비율 등 내용 포함
- 총국은 법률, 법규, 규장,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식품경영자 의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상감독조사요점표'를 정함
 - * 일상감독조사요점표는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 필요에 따라 세분화, 보완할 수 있으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 '일상감독조사요점표'에 따라 식품경영자에 대해 일상감독조사 시행

<표 III-2> 중국, 총국이 발표한 식품판매 일상감독조사요점표의 주요 조사항목⁵⁸⁾

구분		조사항목
식품통용 조사항목	중점 항목	경영자격, 경영조건, 식품라벨 등 외관품질상황, 식품
	일반항목	안전관리기구와 인력, 종업원 관리, 경영과정 통제상황
특수장소 및 특수식품 조사항목		시장개설자·매대(점포)임대자·전시판촉회 개최자,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 식품저장 및 운송 경영자, 식용농산물 도매시장, 특수식품

58) 식품화반넷 식품법규센터 (<http://law.foodmate.net/show-188547.html>)

○ 일상감독조사 시행

- 식품판매부문 감독조사항목은 다음을 포함함
 - 식품판매자의 자격, 종업원 건강 관리, 일반규정 및 금지규정 이행, 경영과정 통제, 입하검사결과, 식품저장(보관), 부적합식품 회수, 라벨과 설명서, 특수식품 판매, 수입식품 판매, 식품안전사고 처리, 식용농산물 판매 등 상황
 - 식용농산물 집중거래시장 개설자, 전시판촉회 개최자, 온라인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 식품저장 및 운송자 등의 법적의무 이행 상황
- 일상감독조사계획에 따라,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 일상감독조사요점표의 일부 내용을 무작위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고, 무작위 샘플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일상감독조사의 중점항목은 반드시 '현장조사방식'으로 진행해야하고, 일반항목은 '서면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식품경영자는 반드시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의 요구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장소를 개방하고 관련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관련 계약서, 영수증, 장부, 기타서류를 제공하고 현장조사와 샘플검사에 협조해야 함
-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이 일상감독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식품경영자는 이를 거부, 방해, 간섭할 수 없음
 - 식품경영장소 등에 진입하여 현장조사 실시
 - 경영하는 식품에 대한 샘플검사 진행
 - 관련 계약서, 영수증, 장부, 기타자료 열람 및 복사
 -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증거 또는 안전위험요인이 있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식품·도구·설비,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된 식품·도구·설비를 조사 봉인, 압수
 - 불법 경영 장소의 강제 폐쇄
 - 법률,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치

○ 일상감독조사 결과

- (결과 처리) 일상감독조사 결과는 '부합', '기본 부합', '미달(부합하지 않음)' 3가지로 구분
 - 결과가 '기본 부합'인 식품경영자에 대해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은 감독조사 중 발견된 문제의 기한 내 시정을 서면 요구함
 - 결과가 '미달'이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식품생산 경영자는 즉각 식품경영활동을 중단해야 함
- (결과 공개) 일상감독조사 종료 후 2일(업무일) 내에 반드시 조사시기, 조사결과,

조사원 성명 등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경영장소의 잘 보이는 위치에 일상감독 조사결과기록표*를 게시해야 함

* 식품경영자는 일상감독조사결과기록표를 다음번 일상감독조사 때까지 게시 유지

□ 운영 결과

○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일상감독조사 결과 공개

- (공개 내용) 조사기관, 조사원 성명, 조사시기, 피조사업체 명칭, 업체유형, 조사결과, 연내 조사횟수 등

<그림 III-1> 중국, 일상감독조사 결과 공개 예시(하이커우(海口)시 룡화(龍華)구 식품약품감독관리국)⁵⁹⁾

海口市龙华区食品药品监督管理局
Haikou Longhu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网站首页 机构概况 工作动态 通知公告 公示公告 办事指南 案件公示公告 领导信箱

日常监督检查公示

您现在的位置: 海口市龙华区食品药品监督管理局 > 专题专栏 > 日常监督检查公示

2018年2月1日日常监督检查结果公示

发布时间: 2018-02-02 字体[大 中 小]

2018年2月1日日常监督检查结果公示

序号	检查部门 (所/大队)	检查人员	检查时间	被检查单位名称	单位类型	检查结果	本年度 次数	风险等级 评定
1	稽查大队	王丽燕、张渝悦	2月1日	海口立德幼儿园	餐饮服务	基本符合	1	B
2	稽查大队	王丽燕、张渝悦	2月1日	海口市启蒙幼儿园	餐饮服务	不符合	1	B
3	稽查大队	王丽燕、张渝悦	2月1日	海口市海景湾花园幼儿园	餐饮服务	基本符合	1	B
4	稽查大队	杨绳熙、陈声伦	2月1日	海口甜草幼儿园	餐饮服务	不符合	1	无

59) 하이커우시 룡화구 식품약품감독관리국
(http://hifda.hainan.gov.cn/hklhsyjj/ztzl/rcjdjc/201802/t20180202_2544757.html)

(3) 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유통식품 관리

□ 관련 법령 등

○ 「식품안전법」 제95조, 제100조

제95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중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수입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가 발견된 경우, 국가출입국 검사검역당국은 반드시 즉시 리스크조기경보 또는 통제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당국에 통보해야 함. 통보를 받은 당국은 반드시 즉시 관련조치를 취해야 함

제100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당국은 다음의 수출입식품안전정보를 수집, 종합해야 하고 관련 당국, 기구, 기업에 신속히 통보해야 함

- (1)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식품 검사검역을 실시하면서 발견한 식품안전정보
- (2) 식품업계협회와 소비자협회 등 조직과 소비자가 전달한 식품안전정보
- (3) 국제기구, 해외정부기구가 발표한 리스크조기경보 정보와 기타 식품안전정보, 해외 식품업계협회 등 조직과 소비자가 전달한 식품안전정보
- (4) 기타 식품안전정보

○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 「수출입식품안전정보 및 리스크조기경보 관리 실시세칙」 등

□ 세부 내용

○ 수출입식품안전정보의 관리

- (정보 정의) 해관총서 및 그 직속기관, 각 지역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직책 수행 과정에서 파악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 보관하는 식품생산·유통·수출입 등 관련 정보
- (정보 범위) 수출입식품안전정보는 다음을 포함함
 - 수출입식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중 발견된 식품안전정보
 - 국내 기타 정부당국이 통보하거나 업계협회·기업·소비자로부터 전달된 식품안전정보
 - 국제조직과 해외정부기구에서 발표한 식품안전정보와 리스크조기경보 정보, 해외업계협회·기업·소비자로부터 전달된 식품안전정보
 - 수출입식품 안전과 관련된 기타 정보
- (정보 분류) 수출입식품안전정보는 '위험정보'와 '일반정보'로 구분하고, 위험정보는 리스크 및 영향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
 - 위험정보 : 국민 생명(건강)에 관계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으며 구조적 리스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 수출입식품 무역 및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식품 품질안전 방면의 정보, 또는 안전, 위생, 환경 등 방면에 리스크를 형성할 수 있어 분석, 연구 판단, 처리가 즉시 필요한 수출입식품 품질안전 방면의 정보

- 일반정보 :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받지 않으며,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출입식품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
- (정보 검토) 해관총서와 검사검역기구는 반드시 전문가를 조직하여 수집된 수출입식품안전정보에 대한 리스크 연구 및 판정을 진행해야 함
 - 검사검역기구는 수집된 수출입식품안전정보에 대하여 리스크 연구 및 판정을 진행하고 정보등급을 정하며 리스크 연구 및 판정에 대한 결론을 도출
 - 해관총서는 수집된 수출입식품안전정보 및 직속 검사검역국이 보고한 리스크 연구 및 판정 결론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험정보등급과 위험관리조치를 정함
- (정보 공개)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수출입식품안전정보는 반드시 해관총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공포
 - 단, 모든 개인과 기관은 허가 또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수출입식품안전정보 및 처리 상황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음

○ 리스크조기경보 및 통제조치

- (리스크조기경보 정의) 국가와 소비자가 수출입식품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또는 잠재적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에 따라 취하는 예방적 안전보장조치와 처리조치
- (리스크조기경보 조치) 해관총서와 직속 검사검역국은 반드시 수출입식품안전 위험정보의 등급에 따라 어떠한 리스크조기경보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고, '리스크경고 통보(通報)'와 '리스크경고 통고(通告)'를 발표함
 - 리스크경고 통보 : 해관총서는 직속 검사검역국에, 직속 검사검역국은 산하기관에 '리스크 경고 통보'를 발표. 검사검역기구는 경고 통보에 따라 수출입식품 검사 검역 및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리스크를 통제해야 함
 - 리스크경고 통고 : 해관총서는 국내외 생산경영기업, 관련 당국, 기구에 '리스크 경고 통고'를 발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소비자에게 '리스크 경고 통고'를 발표함
- (통제 조치) 리스크가 확인된 수출입식품은 해관총서와 검사검역기구가 위험정보 등급에 따라 통제조치를 취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구가 통제조치 실시를 담당

통 제 조 치	1급 위험정보	수출입식품안전 긴급처리 대응안 발령, 수출입 금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 처리
	2급 위험정보	수출입 금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 처리
	3급 위험정보	폐기 또는 반송 처리, 수출입 제한, 관련 기업에 대한 감독조사 강화

- (경고 해제) 수출입식품 안전리스크가 이미 사라졌거나 수용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했을 때, '리스크경고 통보'와 '리스크경고 통고', '통제조치'를 즉시 해제함

□ 운영 결과

○ 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유통식품 관리 예시

- 중국 질검총국(現 해관총서), '프랑스 Lactalis 그룹의 일부 특수의학용도 영유아 조제식품과 영유아조제분유에 관한 소비 경고' 발표(2017-12-06)⁶⁰⁾

배경정보	2017년 12월 2일, 프랑스 위생부가 유제품생산기업 Lactalis에서 생산한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과 영아조제분유(3개 브랜드, 12로트)가 살모넬라 오염이 의심되어 프랑스 당국이 관련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발표
소비경고 (발표내용)	- 질검총국 조사 결과, 해당 3개 브랜드 제품은 모두 일반무역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지 않았고, 이는 프랑스 측에서도 확인해주었음 - 질검총국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등 방식으로 해당 브랜드, 해당 로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

- 중국 질검총국, '프랑스 Lactalis그룹 CRAON공장에서 생산한 영유아조제식품에 관한 소비 경고' 발표(2017-12-13)⁶¹⁾

배경정보	2017년 12월 10일, 프랑스 위생부가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Lactalis그룹 CRAON 공장에서 2017년 2월 15일(포함) 이후 생산한 모든 영유아조제식품 판매 및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관련 제품의 회수 진행을 발표
소비경고 (발표내용)	- 질검총국이 2017년 2월 15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중국 수출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무역 경로로 수입되고 검사검역을 마친 32로트 제품이 프랑스측 회수제품 범위에 해당하고 3개 브랜드가 관련되었음을 확인 - 제품 수입 시, 수입업체는 검사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였고 살모넬라 검사 결과도 모두 '미검출'이었음. 항구 검사검역기구가 일부 제품에 대해 진행한 검사에서도 살모넬라균은 검출되지 않았음 -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프랑스 측 회수제품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 회수를 수입업체에 요구하였으며, 만일 프랑스 측 회수제품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있다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

60) 중국 질검총국 (http://www.aqsiq.gov.cn/zjxw/zjxw/zjftpxw/201712/t20171206_508466.htm)

61) 중국 질검총국 (http://www.aqsiq.gov.cn/zjxw/zjxw/zjftpxw/201712/t20171213_508796.htm)

제3장 맺음말

-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식품의 교역량도 증가 추세에 있음. 한국의 경우 최근 5년간 식품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본 또한 2017년 수입식품의 양이 전년대비 4.5%(신고중량 기준) 증가⁶²⁾하는 등 수입식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매년 식품 수입건수가 증가하는 국내의 상황에서 통관단계의 수입식품 검사강화만으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통관이후 국내 시장에서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함
- 본 조사를 통해 독일과 중국의 경우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있어 수입식품에 대한 별도의 감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일본은 수입식품의 유통관리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인 후생노동성이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통해 수입식품 등의 중점 감시 및 지도 항목 등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등)가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유통 중인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독일의 경우 식품의 기준·규격과 식품영업자의 식품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리스크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 샘플, 영업장, 감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음. 또한, '식품감시 행정규칙'과 '모니터링 행정규칙'을 통해 매년 인구수에 비례하여 검사하여야 하는 샘플 수와 각 주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샘플의 수를 정하여 수입식품을 포함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독일을 포함한 EU 회원국은 가용 정보의 평가를 통해 건강 유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광범위한 리스크 평가가 실시될 때까지 임시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독일은 식품법규 위반에 대한 충분한 의심이 있는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를 명령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제품의 유통을 임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음
- 일본은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통해 수입식품 등의 중점 감시지도 항목, 수업체자의 자주적 위생관리 지도 사항 등을 정하고, 도도부현 등이 지역 실정에 맞게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함. 또한, 해외 식품안전정보에 근거하여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검사 강화, 유통 상황 조사, 회수 및 수입신고 보류 등의 긴급 대응을 하고 있음
- 중국은 유통단계 식품샘플검사, 식품판매에 대한 감독조사에서 수입식품의 유통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정보 수집, 수입식품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62) 일본 후생노동성, 2017년도 수입식품감시통계 (<https://www.mhlw.go.jp/content/000350783.pdf>)

- 수입식품 및 수입업자를 포함하여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독일 및 중국의 사례와 일본의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토대로 한 도쿄도의 식품위생감시지도계획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국내 유통관리계획 수립에 참고·활용하고, 통관단계에서 서류검사 등으로 통관된 수입식품과 해외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검사를 통해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